

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김 동 규*

차 례

- | | |
|------------------------|-----------------------------------|
| 1. 서론 | 4. 장애와 공론장 그리고 심의민주주의의 신체화 |
| 2.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과 한계 | 5. 상처 받을 수 있음(vulnerability)과 공공성 |
| 3.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과 심의민주주의 | 6. 결론을 대신하며: 공공성의 변증법과 상처 받을 수 있음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에 입각하여 장애의 문제를 살펴본다. 하지만 이 논문은 센이나 누스바움과 달리 장애를 역량적 접근의 하위 범주로 넣지 않는다. 이 논문은 역량을 확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장애(disability)로 보고, 역량적 접근을 장애에 대한 보편적 성찰로 확장한다. 역량의 장애를 보편적 장애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를 특수한 문제로 놓고 비장애의 세계와 분리하는 기존의

* 인제대학교 강사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놓인 경계, 즉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놓인 경계를 허물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다. 이는 비장애인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비장애인이란 생각하는 자신 역시 다양한 장애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센과 누스바움은 역량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심의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센이나 누스바움은 정작 심의민주주의가 역량적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심의민주주의 이론가 중 한 명인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역량적 접근이 요구하는 심의민주주의와 연결시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론장 개념의 명확한 한계(disability)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한계를 공론장들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로 해소하려고 한다. 동시에 장애에 대한 역량적 접근의 이론적, 실천적, 정치적 한계도 극복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처 받을 수 있음(vulnerability)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것이고, 상처 받을 수 있음의 두 층위인 일반화된 취약성과 특이한 취약성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 공공성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합리적 합의의 공공성, 연대적 공감의 공공성, 임계적 공공성이 그것이다. 물론 이 공공성은 크게 대칭적 공공성과 비대칭적 공공성으로 묶이며, 이 둘 사이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적 긴장관계가 있다. 바로 이 모순적 긴장관계가 기존의 공공성을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있는 정치적 장소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논문은 기존의 공공성의 무능(disability)에서 공공성의 역량(capability)이 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제어 : 역량, 장애, 상처 받을 수 있음, 취약성, 공공성, 심의민주주의, 역량적 접근, 대칭성, 비대칭성, 합의, 연대, 임계

1. 서론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두 사람은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빈곤 극복을 위한 다양한 역량들을 분석 평가한다. 누스바움이 역량을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빈곤 극복은 비단 경제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역량적 접근이 개인의 성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 일정한 정치적 개입을 요구하는데, 누스바움이 적극자유를 옹호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동시에 이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를 개인과 집단의 역량 실현을 위한 현실적 단위로 간주한다.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에 입각하여 장애의 문제를 살펴본다. 하지만 이 논문은 센이나 누스바움과 달리 장애를 역량적 접근의 하위 범주로 넣지 않는다. 이 논문은 역량을 확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장애(disability)로 보고, 역량적 접근을 장애에 대한 보편적 성찰로 확장한다. 역량의 장애를 보편적 장애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를 특수한 문제로 놓고 비장애의 세계와 분리하는 기존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놓인 경계, 즉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놓인 경계를 허물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다. 이는 비장애인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비장애인이라 생각하는 자신 역시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센과 누스바움은 역량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심의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센이나 누스바움은 정작 심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역량적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심의민주주의 이론가 중 한 명인 하버마스의 공

론장 이론을 역량적 접근이 요구하는 심의민주주의와 연결시킨다. 이 과정에서 공론장 개념의 명확한 한계(disability)도 드러날 것이다. 역량적 접근이 의지하고 있는 심의민주주의마저 장애를 안고 있는 체계라고 한다면, 역량적 접근이 극복하고자 하는 빈곤과 장애의 문제는 어찌 될까? 이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의 공론장(공공성) 개념을 수정 보완하면서 공론장들 사이의 새로운 변증법적 관계를 설정한다. 그럼에도 이 논문은 장애와 공론장의 관계를 거시적 관점으로 진단하는 수준에 그치는 터라, 미시적 차원에서 해명해야 할 논의는 다음 연구로 미룬다.

2.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과 한계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고 개인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도 없다. 센과 누스바움에 따르면, 소득은 기껏해야 개인의 역량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¹⁾ 게다가 이런 식으로 개인을 평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소득수준에도 접근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에게 더 큰 궁핍과 장애를 안길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실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역량적 접근이다.

역량(dynamis)개념의 철학적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을 통해 다양한 선을 증진하는 시민의 능력(역량)을 강조했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역량이 인간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긍정과 연결된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1) 아마티아 센, 한상연 역,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 2009, 61-62쪽 참고; 마사 누스바움, 이상호·이덕재 역,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5, 12쪽 참고.

역량개념을 사용하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담 스미스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미계발되고 허약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성숙하려면 주변 환경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발달을 도와야 한다고 이해했던 사람이다.²⁾

센의 역량적 접근에 따르면, 기존의 성취로 개인을 평가하기보다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확보된 성취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신부나 미혼(비혼)모의 경우 다른 사람(특히 남성)들보다 더 적은 자유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과 같은 양의 기초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적은 자유를 가지고 더 적은 역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간빈곤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 여성 중에서도 기혼여성, 기혼여성 중에서도 아이를 가진 여성, 아이를 가진 여성 중에서도 이혼한 여성으로 갈수록 최악의 시간빈곤에 빠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센은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위해 역량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한다.³⁾

누스바움은 인도의 구자라트 주의 대도시 아흐메다바드에 사는 30대 초반의 가난한 그러나 브라만 카스트의 여성 ‘바산티’의 사례를 보여주며, 그녀의 박탈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적 접근을 설명한다. 누스바움은 인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상당한 장애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그 연장선에서 누스바움은 센과 달리 역량의 개념을 인간에 한정하지 않고 동물로 확장한다.⁴⁾

2) 누스바움, 위의 책, 154쪽, 164쪽 참고.

3) 센, 위의 책, 24쪽, 29쪽 60쪽 참고. 그리고 시간빈곤과 젠더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보라. 브리짓 슬트, 안진이 역, 『타임푸어』, 더퀘스트, 2015. 그리고 Goodin, R. E., Rice, J. M., Parro, A., & Eriksson, L. *Discretionary time: a new measure of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4) 누스바움, 위의 책, 12-24쪽과 33쪽 참고. 역량의 빈곤이 장애와 연결되는 것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같은 책 178-181쪽을 참고.

센과 누스바움은 모두 역량의 복수성, 다양성, 비환원성을 인정한다. 이는 역량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가치다원주의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센의 역량적 접근법이 기본적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내적 역량과 결합 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 및 정의하고, 10대 핵심역량을 확정하여 다른 부수적 역량과 그 중요성에 차이를 둔다.⁵⁾ 뿐만 아니라 누스바움은 센이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의 가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지만, 정작 역량에 관한 체계화된 답을 내리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센이 민주주의와 정의에 관한 이론을 수립하고 그리고 공공정책 및 규범적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량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역량의 실체를 파고들지 않고, 다양한 강조와 사례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⁶⁾

누스바움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최저수준 이상의 결합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은 장애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 누스바움은 이렇게 말한다. “역량 접근법은 인지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은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투표를 예로 들면, 인지장애인이 후보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인지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에게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⁷⁾

5) 여기서 내적 역량이란 훈련되거나 계발된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말하며, 결합 역량은 실질적 자유로서 내적 역량에다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누스바움, 위의 책, 32-33쪽, 36-37쪽 참고. 그리고 10대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생명(Life), 신체건강(bodily health), 신체보전(bodily integrity), 감각, 상상, 사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정(emotions),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관계(affiliation), 인간 이외의 종(other species), 놀이(play), 환경 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누스바움, 위의 책, 49-50쪽 참고.

6) 누스바움, 위의 책, 43쪽 참고.

7) 누스바움, 위의 책, 39쪽.

이 연장선에서 누스바움은 롤즈를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롤즈가 중증 신체장애인이거나 인지장애인을 정의의 장소에서 배제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롤즈의 정의론이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제논리가 더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 즉 합리적 계약 당사자가 아닌 존재의 배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롤즈 정의론의 치명적 한계라는 것이다.⁸⁾

결국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이 갖는 의도는 간단히 말해 모든 사람이 애 취급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주체성을 회복시키는 장치는 무엇일까? 누스바움은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기관)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국가 내부의 헌법체계 또는 국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역량의 구체화가 반영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세계정부나 세계공동체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누스바움은 이것이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심지어 누스바움은 적극적 자유만이 자유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⁹⁾

하지만 이처럼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은 과연 신뢰할 만한 일일까? 예를 들면, 노예무역이 종식된지 200년이 지난 2008년, 미국과 유럽은 노예무역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축하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프리카나 흑인에 대한 대대적 배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⁰⁾ 그리고 미국은 자국 내 인디언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누스바움이 말하는 국가적 재분배의 실효성은 정작 이 두 사례서는 누락되어 있다. 이에 제대로 된 대답을 낼 수 없는 국가라면, 과연 그 국가는 역량적 접근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자유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가?

심지어 누스바움은 그 국가 내부에서 누가 결정자인지, 결정의 방식은 어떠한지, 그 결정의 역학은 어찌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고

8) 누스바움, 위의 책, 109쪽 참고.

9) 누스바움, 위의 책, 57쪽, 76쪽, 86쪽, 138쪽 208쪽 참고.

10) 마커스 레디커, 박지순 역, 『노예선』, 갈무리, 2018, 9쪽 참고.

민을 하지 않는다. 그저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셴의 강조를 인용하여 역량을 보호하는 헌법이 단순 다수결로 수정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다.¹¹⁾ 그런가 하면, 톨즈의 반성적 평형과 중첩적 합의를 수용하는 순진한 접근(이미 이 개념이 근대적 주체개념의 연장에 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을 반복한다. 이런 맥락에서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은 근대적 주체중심주의의 한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톨즈의 반성적 평형에 대한 언급을 넘어 로크의 ‘관용’을 끌어들이는 때도 그러하다.¹²⁾

그렇다면 역량적 접근이 그 뿌리로 삼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그리고 역량적 접근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인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은 주체의 관용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다.¹³⁾ 누스바움이 장애와 정치를 연관시키며 할 수 있었던 말이 기껏해야 대리투표정도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주체 우월의 비대칭성의 논리가, 그리고 대의제 수준을 넘지 않는 정도의 구닥다리 정치기계가 뼈격거리며 다시 시동을 건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른 정치기계를 찾아봐야 하는데, 누스바움이 역량적 접근과 관련하여 심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역량이론을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 이론과 어느 정도 연결시킬 수 있다.¹⁴⁾

11) 누스바움, 위의 책, 138-140쪽 참고.

12) 누스바움, 위의 책, 47쪽, 179쪽 참고.

13) vulnerability는 여기서 취약성으로도 번역되고 있고, 취약성으로도, 상처받을 수 있음으로도 번역되고 있다. vulnerability는 원래 라틴어 명사 “vulnus(상처)”를 어원으로 갖는 영어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Adriana Cavarero, *Horrorism: Naming contemporary viole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p.vii 참고.

14) 누스바움, 앞의 책, 210쪽 참고.

3.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과 심의민주주의

초기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은 후기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의사소통행위 이론으로, 그리고 논변윤리를 거쳐 심의민주주의 이론으로 이어진다. 사적 영역에서 공통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슈화된 주제가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공론장의 논리는, 촛스키의 언어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이론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언어이론과 결합하게 된다. 이 이론적 여정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주장은 사적 영역에서 문제가 된 이야기가 논증적 소통을 통하여 공적 가치를 획득하고, 최종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를 위해 우선 『의사소통능력 이론에 대한 예비 논평』에서 촛스키의 언어능력 이론을 의사소통능력 이론으로 재구성한다.¹⁵⁾ 촛스키가 생성 문법을 통해 한 언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설명했다면, 하버마스는 정작 촛스키가 랑그가 파롤로 전환되는 화용론적 차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만스러워 하면서, 촛스키의 언어능력을 의사소통능력으로 확장한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랑그 중심인 촛스키의 언어능력만으로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 행위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가능한 발화상황의 일반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오스틴의 화용론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오스틴조차 간과했던 발화수반(illocution)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구제한다. 촛스키의 언어능력, 그리고 오스틴의 화용론으로는 발화의 명제적 구성요소(locution)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지만, 하버마스는 발화수반의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특정한 명제적 구성요소가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며, 의사소통에서 일정한 규칙을 통해 그것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

15) Habermas, J. /Luhmann, N.,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Suhrkamp, 1971.

여주었다. 이를 통해 하버마스는 가능한 발화상황 일반의 구조들을 추출해냈고, 이 구조를 보편화용론 또는 형식화용론이라 불렀다.¹⁶⁾

여기서 등장하는 몇 가지 형식은 이렇다. 우선 의사소통의 두 가지 근본적 전제로, 1) 의사소통의 체계적인 왜곡을 배제한다는 것과, 2) 더 좋은 논증들에 대한 강제만이 작동(자유성 조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평등성 조건이 있는데, 1) 모든 (잠재적) 참여자들이 발화행위를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소유해야 하며(논변참여의 개방성), 2) 논증 참여자들이 타당성요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정당화하거나 논파할 평등한 기회를 소유(정당화/문제제기/논파의 동등한 기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상호성 또는 호혜성 조건이 있는데, 1) 논의를 진행할 때, 모든 화자와 청자들은 사회적 역할로 맺어진 행위기대, 즉 특권화를 배제한 행위기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과(호혜적으로 타자관점 취하기) 2) 논의를 진행할 때, 모든 화자들은 서로 발언의 근거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¹⁷⁾

이에 따라 공론장에서 의사소통하다가, 의사소통에 사용되던 정보에 문제가 제기되면, 사람들은 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에서 근거를 교환하는 논변(discourse)로 이동한다. 의사소통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은 여기서 ‘합리적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변 또는 심의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합리적 합의론이다. 물론 이 합의는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늘 ‘비판에 개방’됨을 전제로 하며, 새로운 합의에 의해 기존의 합의가 파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논변의 과정에서 일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든, 불일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든, 합의의 유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든 논변(심의)의 언어구조는 합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16) 김동규, 『개성은 왜 사회를 발전시키는가』, 한울, 2010, 175-178쪽 참고.

17) 김동규, 위의 책, 191쪽 참고.

여기서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공론장과 의사소통적 합의 메커니즘은 1) 의사소통적 ‘능력’을 가진 존재만을 의사소통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 2) 의사소통적 능력을 가진 존재의 ‘합리적 발화’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합의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거부 행위 역시 3) 합리적 거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를 흔히 합의의 이론가로만 본다면, 하버마스가 ‘아니오’라는 발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지나치게 된다. 하버마스는 합의만 큼이나, 오히려 합의보다 더 ‘아니오’라는 발언을 중시한다. ‘아니오’는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합의를 생산하는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힘이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덕분에 그 사회의 공론장이 활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때 ‘아니오’라고 발언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대야하는 ‘책임’을 떠맡게 된다. 하버마스가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반대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화된 개인 때문이다. 하버마스가 이처럼 개인의 힘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드의 이론을 수용했기 때문인데, 미드의 다양한 개념 중에서도 이와 관련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주격 나(I)이다.¹⁸⁾

그러나 미드에게 주격 나는 그렇게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주격 나는 매우 애매한 개념인데, 그 이유는 주격 나가 한편으로 1) 자신의 충동, 무의식 등을 표출할 수 있는 반응 잠재력으로서, 규범을 따르는 사회화된 자아인 목적적 나(me)를 이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창조적 주체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2) 특정 인물의 자기실현이 문제가 될 때 창조적 해법을 찾기 위한 추동력, 즉 ‘자기실현’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또는 사회 속에서 ‘인정받으려는 추동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특히 후자의 주격 나에 대해 ‘일반화하는 능력’이라

18) 김동규, 위의 책, 255쪽 참고.

고 표현한다. 이렇듯 주격 나는 한편으로는 목적격 나에 반응하고 이를 이탈할 수 있는 충동의 에너지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실현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타인에게 인정받고자하는 창조적 추동력으로 드러난다.¹⁹⁾

그러나 하버마스는 미드에게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주격 나의 이중적 힘을 합리적 발화의 장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주격 나의 절반을 폐기해버린다. 즉 일반화될 수 없는 주격 나의 창조적 ‘충동’은 합리적 논변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 바깥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서다. 발화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발언의 기회가 제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발화는 할 수 있으나 그 발화의 합리성이 무시되거나 아직은 합리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는 발화를 하는 사람의 거부(‘아니오’)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특이하고 역설적인 점은 정작 하버마스 자신도 입천장열린증(구순구개열)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발화 장애를 겪는 사람이었으며, 그 장애로 인해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었던 사람이라는 점이다.

4. 장애와 공론장 그리고 심의민주주의의 신체화

역량적 접근은 장애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계적 접근을 수행하지만, 정작 장애를 겪는 이들의 발언을 대리 또는 대표하는 주체를 요구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버리거나, 대리자를 통해 침묵을 강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순진한 기대의 수준에 머물러으로써 장애인의 발화를 이론 내부로 포함하는 데 실패한다. 다양한 존재의 발화를 포함할 수 있는 또

19) 김동규, 위의 책, 259-262쪽 참고.

다른 심의 민주주의자인 하버마스는 발화가능성과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결정의 주체로 놓음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을 심의의 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효과를 냈다. 최근 이러한 배제의 사례는 많다. 그리고 배제된 존재들이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아니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논증적 수준의 책임성조차 갖지 못한다. 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앞에서 철거와 퇴거에 직면한 사람들은 문제없이 누리던 일상에서 추방당하면서 동시에 ‘범법자’로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를 용산과 밀양에서 볼 수 있었다.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복지수당을 받아야함을 인정받았음에도, 자신의 사생활을 관계기관과 사설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불법으로 선고되거나 복지행정 외곽으로 추방되고 만다.²⁰⁾ 아니면 국밥 값을 놓고 사라지거나 방세와 전기세를 놓고 사라진다. 그 외에도 문화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로 스스로 침묵하며 사는 존재들²¹⁾,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보호할 수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해고를 감내할 수밖에 없거나 자살로 사라지는 사람들(GM 대우, 쌍용자동차, KTX 노동자)의 사례 등은 심의의 공론장 내부의 형식적 공정성이 마련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이들이다. 발언권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발언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소위 발언의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런 존재들에게 소위 하버마스적 공론장은 무능의 장이다.

호네트 역시 하버마스의 이론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문제는 바로 당사자들, 곧 무시당한 사람들과 배제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폭력적 저항의 문화 속에서 발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민주적 공론장 안에서

20) 바바라 크룩생크, 심성보 역,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갈무리, 2014, 308-309쪽, 323-325쪽 참고.

21) 『인간증발』(레나모제, 이주영 역, 책세상, 2017)에서 스스로 사라진 사람들이나, 『역량의 창조』 중 바산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도덕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²²⁾ 도대체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 이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일까?

하버마스는 입천장열림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다. 그는 이 장애로 인해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가 있었다. 이 증상을 고치기 위해 두 번의 수술을 한 바 있지만, 수술이 그리 성공적이진 않았던 듯하다. 이 증상 때문에 하버마스는 발화장애를 겪었고, 친구들은 그를 불쾌해하거나 그를 거부하곤 했다. 이 일은 하버마스로 하여금 언어의 극단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고, 발화된 글보다 저술된 글에 대한 우월성에 더 확신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하버마스는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화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심지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거부된 상호성으로 귀결될 정도로 말이다.²³⁾ 그러나 이는 장애인을 끝내 공론장에서 사출 시킴으로써, 심의민주주의 이론과 공론장 이론에 치명적인 난점을 안긴다.

장애인 인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모토 중 하나는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그 어떤 것도 하지마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주의 모델들은 지적 장애인과 정서적 장애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장애인은 프랭크 할러의 사례에서 보듯 추한 사람법(Ugly law)으로 인해 공적 장소에 등장해서도 안 되었고, 선거권도 없었을 뿐더러, 장애 그 자체의 극심함으로 인해 선거 자체를 금지 당했다. 심지어 서구 정치사상 자체가 장애를 통상적으로 배제하면서 전개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포용을 전제로 합리적인 발화행위를 참여의 조건으로 생각했는데, 장애인들은 이러한 생각에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심의민주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육

22) 악셀 호네트, 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 나남, 2009, 135쪽.

23) Stacy Clifford, “Making disability public in deliberative democracy”,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Vol. 11, 2, 2012, p. 222 참고.

체에 대한 무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는 비발화적 의사소통이라는 대안적 모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다양한 발화가능성을 처음부터 불가능(disable)하게 만들었다²⁴⁾.

하버마스는 구어적 표현의 불명료성을 의사소통의 윤리나 심의민주주의 영역 밖으로 사출시켜버림으로써 의사소통적 공론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불명료함을 정리한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규범들 중 최고의 규범인 ‘누구나 논쟁의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방성과 포용성의 원칙을 어긴다. 그래서 비판적 심의이론가들은 정당한 발화의 경계를 문제 삼고 비구어적(non-verbal) 참여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일라 벤하빕이나 아이리스 영이 비구어적 참여자들이 육체를 통한 발화에 관심을 가지거나, 인사하기, 수사법 그리고 서사와 같은 다양한 발화의 매체를 공적인 장에 통합시키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규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거나, 구어적 표현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들은 여전히 하버마스의 유산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견해의 등장이 의미 있는 것은 하버마스가 경청의 혼란과 붕괴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던 곳에서 정작 신체화된 발화가 공적인 활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활력은 동시에 다양한 관점보다는 다양한 매체와 신체를 공적인 장으로 포용하게끔 자극한다.²⁵⁾ 이를 우리는 심의민주주의의 탈신체화에서 신체화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신체의 등장은 다른 사람에 의한 장애의 일방적 번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신체 언어로서의 ‘아니오’에 해당한다. 케이시 코너와 헤리엇 맥브라이드 존슨은 이러한 거부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들은 각각 뇌중풍 질환을 앓고 있고, 중증 근육무력증을 앓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점

24) Stacy Clifford, op.cit, pp.211, 213, 216-217 참고.

25) Stacy Clifford, op.cit, pp.212, 215-216, 218 참고.

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배제해버리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는 오해로 가득 찬 채 신체를 마주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며, 이 대면이 신체적이기에 언어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장애인을 탈정치화시키기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의 공개성과 포용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장애인을 인정하고 포함하는 것이 공적 이해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²⁶⁾

5. 상처 받을 수 있음(vulnerability)과 공공성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하버마스 심의민주주의론의 기반이 되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는 강제가 없어야 한다는 자유성조건과 발언의 기회나 이의제기의 기회 등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평등성 조건이 있었다. 여기에 호혜성 조건이 부과되었는데, 이 호혜성의 유형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각각의 구성원이 언어적 규칙을 지킬 수 있다는 호혜성의 유형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적인 장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수용 가능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각각의 구성원이 타자의 관점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호혜성을 가역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²⁷⁾

하지만, 장애와 관련하여 호혜성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수 스웬슨(어머니)과 찰리 스웬슨(아들) 가족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수 스웬슨은 장애인 권리운동을 하는 사람이자, 육체적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찰리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수는 UN이 장애인 권리협회를 설립할 당시,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서 그 협회에 가

26) Stacy Clifford, op.cit, pp.218-219 참고.

27) 김동규, 위의 책, 191쪽 참고 또는 Stacy Clifford, op.cit, p.221 참고.

입하고자 했고, 수는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협회에서 거부당하게 된다. 그녀는 스스로 아들을 대리함으로써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협회의 거부에 항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들을 UN의 장애인 권리협회의 회의가 열리는 곳에 데리고 간(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수와 수의 비장애인 아들 그리고 유급보조원이 동원되어야 했다.) 다음,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장애인들 앞에서 찰리는 자신의 의지를 몸짓과 신음으로 표현했고, 이와 동시에 수는 아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아들을 식당에 데려다 줄 사람을 협회회원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협회회원 역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어 아무도 수와 찰리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해 협회는 찰리의 신체적 등장으로 인하여 찰리의 엄마(수)와 그 조력자가 모두 찰리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의견일치에 이른다. 여기서 찰리의 신음과 몸짓(발화) 그리고 수의 응답이 서로 호응을 이루어 하나의 발화효과를 냈다. 스테이시 클리포드는(Stacy Clifford) 이를 협력적 발화(collaborative speech)라 부른다. 우리는 여기서 상호 의존성 또는 호혜적 의존성을 살펴볼 수 있다.²⁸⁾

이 사례를 통해 하버마스의 호혜성 개념을 살펴보자면, 하버마스가 말하는 호혜성은 이 가족에게 매우 유해할 수 있다. 우선 하버마스의 첫 번째 호혜성은 이 가족을 아예 의사소통의 장에서 제외시켜버린다. 왜냐하면 이 가족의 사례에서 첫 번째 호혜성을 만족시키는 의사소통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두 번째 호혜성,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투명하게 내면화시킬 수 있다는 호혜성 역시 너무 쉽게 무너진다. 실제로 영이 인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은 대부분 자신에게 중증 장애가 오면, 장애인으로 살기보다는 자살을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의 삶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장애인 차별적 관점의 일환이다. 이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세계

28) Stacy Clifford, op.cit, p.220 참고.

속에서 비장애인의 발화가 오히려 장애인 차별을 강화할 수도 있는 일이다.²⁹⁾

하버마스 역시 자신의 개인적 상처로 인해 새로운 호혜성을 짧게 언급한 적이 있다. 유아기 때에 경험한 첫 수술에서, 그는 인간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인간이 서로 호혜적 의존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5살 때 경험한 두 번째 수술에서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더 확고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하버마스는 자신의 언급을 장애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호혜적 의존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한다. 그래서 그의 의존성에 대한 설명이 다시금 언어와 합리성의 범주 안으로 함몰되고 만다. 동시에 인간의 상처 받을 수 있음(vulnerability)은 크게 축소된다.³⁰⁾

이러한 호혜적 의존성이 언어 수준을 넘어서는 사례는 많다. 신체장애가 있는 케이시 코너와 인지 장애가 있는 다이아나 브라운의 경우 이들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돌보면서 요양원이나, 국영 복지기관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체 가족으로 살 수 있었다. 이들의 삶은 제도적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데, 이 역시 호혜적 의존성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버마스는 이후 의사소통적 능력과 가역성으로서의 호혜성을 축소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체의 상처 받을 수 있음이 새로운 호혜성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³¹⁾

이러한 호혜성은 발화 없는, 그러면서도 신체적인 호혜성이자, 일종의 새로운 공공성을 출현시킬 수 있는 것 아닐까? 실제로 스웬슨 가족은

29) Stacy Clifford, op.cit, pp.221-222 참고.

30) Jürgen Habermas, "Public space and political public sphere- The biographical roots of two motifs in my thought", Commemorative Lecture: Kyoto(Script), 2004.(<http://unige.ch/sciences-societe/socio/files/4114/0533/6210/rg.pdf>)를 참고하거나 Stacy Clifford, op.cit, pp.222-223 참고.

31) Stacy Clifford, op.cit, pp.223-224 참고.

UN 장애인 권리를 위해 새로운 공적 이슈와 해답을 만들어냈고, 코너와 브라운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방식과 공적 서비스에 새로운 공적 이슈와 해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클리포드는 심의의 장에서 우리의 인식적 결손을 고려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가 있는 발화를 통합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을 양분하는 공공성을 창조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모든 참여자들이 인지적 한계들과 마주치는 방식을 드러내야 한다.³²⁾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공공성이 도래함을 알 수 있다.

6. 결론을 대신하며: 공공성의 변증법과 상처 받을 수 있음

우리는 장애를 통하여 공공성의 세 가지 층위를 추론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언어적 호혜성, 즉 타자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합리적 호혜성에 입각한 공공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언어적 합리성에 입각한 상호주관적 주체들이 생성하는 공공성이 그것인데, 이는 하버마스가 익히 옹호하고 강조해왔던 것이며, 추후 심의 민주주의로까지 이어지는 공공성의 유형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단 ‘합리적 공공성’이라 부르자. 하지만 이 합리적 공공성과 구분되는 또 다른 공공성이 있다. 일종의 대칭적 감성의 연대가 그것인데, 하버마스는 이를 정의의 타자라 부른 바 있다.³³⁾ 하버마스는 연대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그들과 인간

32) Stacy Clifford, op.cit, pp.223-224.

33) Jürgen Habermas,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Suhrkamp, 1991, S.70-71;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역, 『담론윤리의 해명』, 문예출판사, 1997, 88-87쪽 참고.

의 의사소통적 삶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상호 노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정한 부담과 고통과 과제를 어떤 공통의 것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생기는 사회적 소속감이 중요하다.³⁴⁾ 하버마스에게 연대가 이렇다면, 우리는 여기서의 공공성을 ‘연대적 공공성’이라 부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두 공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공공성이 있을 수 있다. 소위 발화로 환원될 수도 없고, 정서적 공감을 통한 연대성조차 획득할 수도 없는 것(의 공적 출현) 말이다. 그리고 기존의 두 공공성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는 일종의 (아직 아닌) 사건으로서의 공공성이 있을 수 있다. 합의와 공감을 초과하는, 그래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공공성을 획득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공적 가치를 가져야 할 힘(가능성)을 가진 공공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합리성으로서의 공공성이 자유성, 평등성, 호혜성이라는 형식을 내세워 합리적 의사소통에 내재하는 내적 초월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지속적인 합의가능성과 공감적 연대를 촉발하는 공공성 외부의 힘, 기존의 공공성을 초과하는 힘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를 나는 다른 곳에서 의사소통적 공공성의 이중적 선형성(초월성) 중 한 계기라고 부른 바 있고, 후자의 공공성을 ‘임계적 공공성’이라 불렀다. 기존의 두 공공성에 임계를 부여하는 (아직 아닌) 공공성 말이다.³⁵⁾

이러한 공공성을 분류하자면, ‘합리적 공공성’과 ‘연대적 공공성’은 모두 대칭성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는 공공성이지만, ‘임계적 공공성’은 비대칭성을 통해 작동하는 공공성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앞서 언급된 협력적 발화 자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합리적 합의와 공감적 연대와 같은 대칭적 교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라지고 추방된 존재가 의문시할 수 있는 또는 아직은 할 수 없는 기존의 공공성, 증발한 존

34) 악셀 호네프, 위의 책, 212-213쪽 참고.

35) 이에 대해서는 줄고, 『호러리즘과 임계적 공공성』, 『대동철학』 79집, 대동철학회, 2017을 참고.

재 또는 무젤만이 제기할 수 있는 또는 아직은 할 수 없는 공공성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하버마스적 공공성의 구성적 외부이자, 대칭성으로 해소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아직 아닌) 공공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공공성 모두에 관찰되는 공통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주체의 취약성(vulnerability)이다. 진리를 자처할 수 없는 주체가 타자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지만, 그 합의 역시 취약(vulnerable)하기에 늘 비판에 개방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생산된 합의조차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합리적 사유의 산물이다. 무제한적 합의의 가능성도 바로 이 취약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공감적 연대에 입각한 공공성 역시 그러하며, 그 취약성으로 인해 공감적 연대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감적 연대의 대칭성과 합리적 합의의 대칭성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던 가장 취약한 곳에서 세 번째 비대칭적 공공성이 일종의 가능성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결국 세 가지 공공성은 취약한 주체의 대칭적 상호성에서 출현하는 (합리적, 연대적) 공공성과 비대칭적 관계에서 출현하는 임계적 공공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버마스의 상호주관성이론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적 상호 주체성이 아니라 언제나 상처받을 수 있는 취약한 (대칭적-비대칭적) 관계 주체성으로 다시 번역되어야 한다.³⁶⁾

여기서 우리는 상처 받을 수 있음을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화될 수 있는 취약성과 특이한(singular), 즉 일반화될 수 없는 취약성이 그것이다. 하버마스가 미드에 힘입어 일반화된 타자와 구체적인 타자로 나누어 타자성에 입각한 합리적 공공성을 고안했다면, 우리는 취약성에 입각하여 타자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36) 물론 우리는 비대칭성 저 편에 있는 존재에 ‘주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지 모른다. 아직 아닌 주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충분할지도 의심스럽다. 그와 같은 주체를 비체(abject)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 구체적인 타자는 추후 일반화될 수 있는 타자의 양상과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타자의 양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타자는 일반화된 취약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두고, 이 일반성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타자성을 특이한 타자로 놓자. 그렇다면 취약성은 일반화된 타자와 구체적인 타자가 포함되는 일반화된 취약성과 결코 일반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이한 취약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제 일반화된 취약성은 추후 목적격 나(me)라는 새로운 주체화를 시도할 수 있는 사회화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타자는 주체의 책임적 수용성(수동성)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 수 있다. 반면 특이한 타자는 일반적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타자의 독특성과 연결되어 있고, 주체를 당황스럽게 하고, 그 주체의 자리를 허문다. 이 연장선에서 우리는 우선 일반화된 취약성에 입각하여 비장애인의 신체적 의미를 비장애인 TABs(temporarily able-bodied persons: 잠정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적극 구상할 수 있다.³⁷⁾ 누구나 상처 입을 수 있으며,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일반화된 취약성을 통해 모든 사람의 상처 받을 수 있다는 호혜적 공감과 이에 기반을 둔 합의의 가능성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 일반화된 취약성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공성을 생산 수 있다. 바로 이 대칭성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주체의 아니오 또는 반감(공분)이 출현하고, 이로 인한 새로운 합의와 새로운 연대성을 창출할 수 있다.

끝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특이한 취약성(vulnerability)은 대칭성으로 환원될 수도 없는, 그래서 합의나 공감적 연대로 해소되지 않는 공적 잠재성이라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취약성과 공감할 수 없는 취약성의 출현은 기존의 합리적 공공성과 연대적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특이한 취약성 앞에서는 기존의 공공성 역시 취약하다. 예컨대 인권이 박탈된 사람을 일반화될 수 있는 취약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

37) TAB에 대해서는 Stacy Clifford, op.cit, p.217 참고.

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만의 박탈이 가진 취약성, 그래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 덕분에 우리는 한 개인의 인권 박탈의 상황에서 그 박탈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 으면서도, 완벽히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아이러니를 동시에 가 질 수 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취약성 때문에 주체는 상처 받은(받을 수 있는) 타자를 향해 자신(의 자리)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생긴다. 이 비대칭성으로 인해 늘 새로운 대칭적 상호 이해와 상호 공감의 가능 성이 열린다. 이 속에서 주체 역시 일반적 자기 결정의 자율성과 특수한 자기실현의 실존성을 매번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 기존의 이해와 공감 에 임계를 부여하는 비대칭적 취약성의 출현으로 기존의 공공성과 주체 성은 자신의 자리를 허물며 타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제 앞에 서게 된다.³⁸⁾

취약한(vulnerable) 존재의 의존성은 이렇게 대칭적 의존성과 비대칭 적 의존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러한 주체의 취약성에서 잠재성 개념과 역량적 접근을 출발시켰다는 사실을 앞서 살 펴보았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서 출발하는 역량적 접근 의 정치성 역시 이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침묵과 증언으로 기존의 공론장을 흔드는 미투 운동과 같은 것이 비대칭적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임계적 공공성의 출현이라

38) 자율적 주체성의 구성적 외부에 대해서는 악셀 호네트, 앞의 책, 298-301쪽을 참고. 그러나 여기서 호네트는 이러한 구상을 상호주관성이라는 대칭적 형식에 서만 생각하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상호주관적 대칭성의 형식에서는 결국 주체는 탈중심화라는 보편적 차원(보편적 이해와 보편적 공감)만을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상호관계적 비대칭성 속에서는 이해 불가능과 공감 불가능한 것에 대한 수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주체의 보편 적인 능력획득(자기결정의 자율성)과 관계되지만, 후자는 주체의 특이성의 형성 (자기실현의 실존성)과 관계될 수 있다. 호네트는 이를 각각 대칭적 도덕과 비 대칭적 사랑의 관계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악셀 호네트, 『사랑과 도 덕』, 같은 책, 267-290쪽을 참고.

한다면, 이들의 등장을 공감적 연대로 받아내는 위드유가 대칭적인 연대적 공감성으로서의 공공성으로, 그리고 이 연대적 공감성을 합리적 대응 전략으로 번역하는 각종 공론장(이를 테면 합리적 여성주의)을 대칭적인 합리적 공공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미투 운동은 기존에 발언하지 못하거나, 발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침묵을 깨고 나오는 운동이자, 다수의 여성들이 여태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공적 운동 그래서 기존의 공공성에 임계를 부여하는 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시에 공감적 연대로서의 공공성과 합리적 공공성으로 해석되도록 촉구하는 복합적 양상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칭적 취약성이 기존의 합리적 공공성과 연대적 공공성 내부에서 합리적 발화로서의 아니오, 반감(분노)으로서 아니오로 기존의 공공성을 개정(reform)한다면, 이에 반해 비대칭적 취약성의 등장은 기존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 또는 합리적 공공성과 연대적 공공성에 임계를 부여하고, 반역(revolt)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다시 말해 비대칭적 취약성의 등장은 합리적 공공성과 연대적 공공성의 임계를 선언하는(할 수 있는) 일종의 (아직 아닌)신호이다. 이 신호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I would prefer not to be decided like that)”라는 의미를 내포한 (침묵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발화이다.³⁹⁾ 이 신호는 몸의 언어로 등장할 수도, 글의 언어로 등장할 수도, 말의 언어로 등장할 수도 있으며, 이미지로 등장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어떤 것도 아닌 채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부재한 빈칸으로 기존 공공성의 그늘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결코 역량

39) 이 대사는 필경사 바틀비에 등장하는 대사이며, 이 대사가 갖고 있는 잠재성에 대한 긍정은 아감벤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115-117쪽 참고.

적 접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역량적 접근이 이해와 공감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접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역량적 접근의 정치(공공성)가 자기 결정이 불가능한 주권자를 위한 정치(공공성)라는 아포리아에 빠져 있음을, 그래서 기존 공공성의 취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능(disability)의 정치(공공성)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량적 접근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무능함이며, 이 무능함에는 정작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러나 이 무능함에서 새로운 결정 가능성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장애(무능)를 인식하지 못하는 역량적 접근 또는 심의 민주주의는 결코 역량적 접근도, 진정한 심의민주주의도 아니다. 오히려 역량적 접근은 단순 심의민주주의적 공공성을 넘어 세 가지 공공성의 변증법적 역학 속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역량적 공공성이라 하자. 역량적 공공성은 장애에 부딪힌 기존의 공공성을 새로운 공공성을 통해 변혁하고 개정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역량을 확보해나가는 공적 정치이다.

참고문헌

- 김동규, 『호러리즘과 임계적 공공성』, 『대동철학회지』 79집, 대동철학회, 2017, 169-193쪽.
- _____, 『개성은 왜 사회를 발전시키는가』, 한울, 2010.
- 레나모제, 이주영 역, 『인간증발』, 책세상, 2017.
- 마사 누스바움, 이상호·이덕재 역,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5.
- 마커스 레디커, 박지순 역, 『노예선』, 갈무리, 2018.
- 바바라 크룩생크, 심성보 역,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갈무리, 2014.
- 브리짓 솔트, 안진이 역, 『타임푸어』, 더퀘스트, 2015.
- 아마티아 센, 한상연 역,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 2009.
- 악셀 호네트, 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 나남, 2009.
-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역, 『담론윤리의 해명』, 문예출판사, 1997.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허먼 멜빌, 한기욱 역, 『필경사 바틀비』, 창비, 2010.
- Adriana Cavarero, *Horrorism: Naming contemporary viole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 Axel Honneth, *Das Andere der Gerechtigkeit: Aufsätze zur praktischen Philosophie*, Suhrkamp, 2000.
- Goodin, R. E., Rice, J. M., Parro, A., & Eriksson, L., *Discretionary time : a new measure of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Iris M. Young,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Jürgen Habermas, "Gerechtigkeit und Solidarität Zur Diskussion über 'Sutfe 6'"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Suhrkamp, 1991.

- Jürgen Habermas, “Public space and political public sphere- The biographical roots of two motifs in my thought. Commemorative Lecture: Kyoto”(Script), 2004.(<http://unige.ch/sciences-societe/socio/files/4114/0533/6210/rg.pdf>)
- Jürgen Habermas/Niklas Luhmann,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Suhrkamp, 1971.
- Selya Benhabib, *Situating the Self: Gender, Community, and Postmodernism in Contemporary Ethics*, Routledge, 1992.
- Stacy Clifford, “Making disability public in deliberative democracy”,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Vol. 11, 2, 2012.

<Abstract>

Disability, Capabilities and deliberative Politics in public sphere

Kim, Dong-Gyu*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disability based on the capabilities approach of Amartya Sen and Martha C. Nussbaum. However, this paper does not classify disability by a subcategory of capabilities approach, unlike Sen and Nussbaum. This paper considers all situations that can not capabilities as disability and tries to expand capabilities approach to universal reflection on disability. The reason for trying to survey the disability as a universal disability is to overcome the existing dichotomy that separates the disability from the non-disability. In other words, it is an attempt to break down the boundary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that is, the boundary between the term of 'us' and the term of 'them'. It start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non-disabled can be the disabled at any time and that the non-disabled has always disabilities.

Sen and Nussbaum rely on deliberative democracy as a political means to realize a capabilities approach. However, Sen and Nussbaum do not explain how does deliberative democracy achieve a capabilities approach. Thus, this paper links Habermas' s theory of public sphere or the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with a capabilities approach. In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reveal the apparent disability of public

* In-je University

sphere, and try to resolve this disability by means of dialectical tension between public spheres.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will be introduced for this purpose. Vulnerability has two levels. It is generalized vulnerability and singular vulnerability. This vulnerabilities has three publicness, that is, 1) The publicness of rational consensus, 2) the publicness of solidarity, 3) the critical publicness. These publicness are largely tied to symmetrical publicness and asymmetric publicness, and there is contradictory tension between them. These contradictory relationship always product the crack in the existing public sphere. Through all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demonstrate that the capabilit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re emerged from the disability of existing publicness

Key Words: capability, disability, vulnerability, publicness, public sphere, deliberative democracy, capabilities approach, symmetry, asymmetry, consensus, solidarity, the critical

■ 논문접수 : 2018년 6월 27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4일

■ 게재 확정 : 2018년 8월 17일

